

<설명자료>

## 한·중 FTA대비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

연구자: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선임연구위원: 어명근(☎ 02-3299-4364, myongeor@krei.re.kr)

연구위원: 전형진(☎ 02-3299-4324, hjchon@krei.re.kr)

부연구위원: 김성우(☎ 02-3299-4115, swootamu@krei.re.kr)

부연구위원: 한재환(☎ 02-3299-4352, jhhan@krei.re.kr)

### □ 연구의 배경

- 한·중 FTA는 양국 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. 특히 원예산업은 한·중 농산물 교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여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임.
- 한·중 FTA 체결 이후 중국의 원예산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농업생산·경영구조의 변화에 따른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.

### □ 연구 방법

-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, 통계분석, 관련기관 및 현지 방문조사, 원고위탁, 위탁연구,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.

### □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

-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한·중 농산물 교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내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원예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 원예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임. 연구 결과 도

출된 대응방안은 첫째, 한·중 간 원예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 및 생산계열화를 통한 국내 원예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함.

- 중국 원예산업은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생산비구조로 전환중임. 국내산 주요 채소 및 과수 품목의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해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함.
- 중국은 영세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. 생산계열화를 통한 중국 원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도 농식품기업과 생산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조치가 요구됨.

#### □ 중국산 원예작물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

- 한·중 간 원예농산물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김치와 양념채소를 중심으로 중국산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임. 이에 중국 원예농산물 수급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함. 아울러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급 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적시에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농업전망모형 구축 및 운용이 필요함.
- 국내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중국산 수입 의존이 불가피함. 이런 상황에서 중국 현지 식품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.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기업(제조업체) 사전등록제와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. 또한 한·중 양국이 2003년 체결한 '식품안전협력약정'을 개정하여 중국 정부와 항구적 식품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.
-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한·중 FTA는 양국 간 농산물 무역구조로 볼 때 발작물 FTA로 규정할 수 있음. FTA 체결시 가장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채소산업 피해보전대책과 함께 발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의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한·중 FTA의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원예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.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 수출체질 강화 및 기반 구축, 품목별 차별화 전략, 시장세분화 전략,

중국시장 내 물류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
□ 동식물 검역 분야에서 지역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

- 한·중 FTA 1단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WTO/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음.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이 제기한 지역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.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국가들과 동식물 검역 분야에서 WTO/SPS 규정에 의거한 지역화 원칙의 적용 사례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.
- 하지만 지역화 원칙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 충족은 어디까지나 수출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중국측에 납득시키고 동식물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 등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야 할 것임. 지금까지 WTO/SPS 협정의 지역화 규범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지 않았고, 지역화의 개념이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수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임.
-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·중 농산물 교역에서도 지역화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내적으로 지역화 인정과 관련한 과학적인 기준과 수입 위해성 평가 및 검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. 또한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검역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